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15
----------	--------

제출년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설호영, 김재국, 현옥순
이진분, 최진호, 김유숙
최찬규, 유재수, 황은화
박은정 의원(10인)

1. 제안이유

-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저출산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족·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을 제도화하고 가족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생축하금 첫째아이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돌봄조력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에 따라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의료기관 이송, 청결과 위생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돌봄조력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2조)
- 전출·사망, 부정수급, 수령 거부 등의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3. 일부개정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 4. 현행 조례 : 붙임 2
-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서
- 7. 부서검토의견 : 붙임 5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이”란 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1. “영유아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돌봄조력자”란 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유아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가족돌봄수당”이란 돌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100만원이내”를 “20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이내”를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가족돌봄수당 등”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가족돌봄수당) 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돌봄조력자의 책무) ①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돌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돌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④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돌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영유아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부정수급 관리)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의 수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종전의 제21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 가족돌봄수당”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2조) 본문 중 “학자금”을 “학자금, 가족돌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7. ~ 9.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입양특례법」 ---- ----- -----..</p> <p>7. ~ 9. (현행과 같음)</p> <p>10. “아이”란 시에 거주하는 <u>「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p> <p>11. “영유아 가족돌봄”이란 <u>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u></p> <p>12. “돌봄조력자”란 <u>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유아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13. “가족돌봄수당”이란 <u>돌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u></p>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 아이는 100만원이내
2. 둘째 아이는 300만원이내
3. 4. 삭 제
5. (생 략)

제5장 보칙

<신 설>

<신 설>

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 200만원 이내
2. ----- 300만원 이내
5. (현행과 같음)

제5장 가족돌봄수당 등

제21조(가족돌봄수당) 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돌봄조력자의 책무) ①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돌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

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돌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④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돌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영유아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부정수급 관리)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의 수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 설>

<신 설>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활용 할 경우에는 비치하
지 않을 수 있다. 제24(시행규
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신 설>

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자시스
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